

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312호

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(정상지가상승분)제5항, 제22조의2(부담금의 일부환급)제1항 및 제24조(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)제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2024년 06월 26일

국토교통부장관

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

① 적용 이자율 구분

구 분 (근거조항)	연 이자율	월 이자율
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(정상지가 상승분) 제5항	3.50%	0.2916%
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(부담금의 일부환급) 제1항	3.50%	0.2916%
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(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) 제4항	3.50%	0.2916%

② 적용기간 : 2024. 7. 1부터 2025. 6. 30까지